

재활용분야 질의 응답

폐전선 처리방법

Q

저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철거전문업체입니다.

공사중 발생하는 폐전선은 현실적으로 저희 현장내에서 피복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폐전선전문업체에 매각하고 폐전선 전문처리업체에서 피복과 동선을 분리하여 폐기물신고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발주자측과의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폐기물법상 폐전선의 신고대상자가 누구인가와 폐전선전문처리업체에서 폐전선을 수거하여가서 분리하고 폐기물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도 되는가입니다.

저의 짧은 개념상으로는 폐전선을 저희는 상품으로 보아 폐전선업체에 매각을 하고 폐전선업체가 피복을 분리하여 폐기물신고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함이 맞지 않는가하고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 공사현장에서 폐선의 피복을 분리할수 없으며, 그공간도 없는 관계로 상기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전선은 철거공사 주체가 적정처리할수 있는 업체에 직접 위탁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품 또는 폐기를 판단

Q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에서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 합성수지 제조과정중 발생한 부산물(제품제조과정중에서 발생한 scrap, lump)은 고가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생 부산물은 정관, 사업자등록증에(등기부등본) 부제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제품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제조과정 중에 발생하는 스크랩의 경우 폐기물에 해당될 것이나 제조 공장의 공장등록증에 제품으로 등록하여 판매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 처리업인지 재활용 신고인지

Q

저희는 스티로폼 재생하는 업체로써 잉코트는 재활용신고로써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팅제를 만드는 일은 중간 처리업인지 재활용 신고인지 궁금합니다.

페티로품을 유기용제에 녹여 재생수지를 제조될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에 해당됩니다.



농촌 폐비닐중간가공시설의 신고 대상은

현재 한국환경공사에서 발주한 봉화폐비닐중간가공시설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은 농촌의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주요공정은 폐비닐 투입 - 파쇄 - 선별 - 압축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담당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재활용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득해야 한다 하기에, 적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그간의 유사민원과 관련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26조(폐기물처리업), 제44조의2(재활용 신고) 등을 첨부하여 신고대상 시설이 아님을 설명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질의한 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사에서 운영중인 농촌폐비닐중간가공시설(8개소)은 농촌의 폐비닐을 원료로하여 폐비닐투입, 파쇄, 선별, 압축 공정으로 최종 생산제품인 폐비닐압축품은 국내의 재활용업체에서 물질재활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폐토, 이물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련법령은 농촌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재활용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신고 대상 시설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환경자원공사에서 재활용처리하는 농촌폐비닐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해당 시·군·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별도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없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라 수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분해 용기 분리 배출 표기 사항

야채를 생분해 용기에 포장하여 납품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분리배출 표기가 없다가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

용기상에 영문으로 NatureBorn1974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분해 용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사항을 표기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귀하가 질의하신 생분해성용기(nature born 1974)에 야채를 포장하는 경우 별도의 분리배출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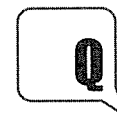
정제연료유의 운송에 관하여

저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금년(2006년 1월)부터는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3호 바 항목)

이때 공장에서 사용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 운송차량은 반드시 공장(정제유 회사)소유차량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탱크로리 및 홈로리를 임대한 후 운송을 하여 판매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정제연료유 제조업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송은 가능하나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파우리가 많이 있어 그걸 처리하려고 부천시청과 여러 자원업체에 문의 했는데 뽀족한 얘기를 듣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파유리의 경우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하나 관련협회인 유리병재활용협회(02- 3476-1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폐침목 재활용 범위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제46조[별표11의2] 4의15에서 '철도폐침목을 옥외 계단용, 옥외 바닥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에 해당' 된 다에서 철도폐침목에는 목침목과 콘크리트(PC)침목이 있는데 재활용 대상에 콘크리트(PC)침목도 해당이 되는지요. 폐콘크리트 침목은 원형 그대로 노반보강이나 계단 등에 사용 시 환경오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철도폐침목에 콘크리트(PC)침목도 포함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오니 포함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철도공사의 폐침목 구분은 크게 2종(목침목과 콘크리트(PC)침목)으로 분류되며 목 침목에는 보통, 분기, 교량 등과 콘크리트 침목은 50, 60kg을 단일 1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침목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1의2] 4의15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RPF 재활용신고 관련



본사는 금번 폐합성수지로 RPF를 제조하여 시멘트공장에 연료로 납품하기위해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가동개시신고를 마친 상태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고자 하나 해당 관청에선 환경부예규 제245호(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RPF 품질·규격 인증서를 재활용신고 서류에 첨부하여야 신고가 수리된다 합니다. RPF 품질·규격 인증서(한국환

경자원공사에서 교부)를 교부받기 위해선 검사대상제품(RPF)을 생산해야하고 RPF를 생산하기 위해선 일정량의 폐기물(폐합성수지)이 필요하나 재활용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업체로부터 받아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경우 제품검사를 위한 일정량(1톤미만으로 예상)의 폐기물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샘플시료를 위한 폐기물의 소량 반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영업목적 이 아닌 조건부여 및 시험연구목적 등을 사유로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폐식용유를 수거 재활용관련 정부지원금

학교 급식실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연간 300톤 정도를 수거하여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있는지요.

우리부에서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을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규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재활용제품에 대한 판매 지원, 재활용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실로 문의 또는 상담(032-560-1661~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